AMNESTY INTERNATIONAL

성과 재생산권리, 알고 주장하기

목차

· 성과 재생산 권리 03

·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른 성과 재생산 권리 04

·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08

· 성교육과 성(섹슈얼리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10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12

· 가족 계획 14

· 청소년이 경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장벽 16

· 폭력으로부터 보호 18

· 책무성과 구제방안 21

· 인권과의 관계 22

· 성과 재생산권리, 알고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24

성과 재생산 권리

우리는 모두 섹슈얼리티(성姓)와 재생산에 관한 특정 인권을 갖고 있다. 성과 재생산 권리라고 통칭되는 이 권리는 자신의 신체, 인간관계, 의사결정 능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동등한 성과 재생산 권리가 있다. 성과 재생산 권리는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법에서 인정하는, 이미 확립된 인권 원칙과 보호장치에 기인하여 발전되어 왔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강압, 폭력, 차별 없이 자유롭게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자신의 건강, 신체, 성생활, 성 정체성에 대한 의사결정
- 성관계, 피임 등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 요구 및 습득
- 섹슈얼리티, 성과 재생산 건강, 인권, 성평등 관련 포괄적 교육에 대한 접근성
- 자녀를 가질 것인지 여부와 시기의 결정
- 혼인 여부와 가족의 형태에 대한 선택
- 포괄적이고 통합된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강제 임신, 강제 임신중지, 동의하지 않은 불임수술, 강제 결혼, 여성성기절제 또는 여성할례 등 강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

2012년 유엔 인구개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 등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유롭게 결정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유엔 인구개발위원회 2012년 결의 1호 7항)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른 성과 재생산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를 뒷받침하는 기본적 권리와 자유, 그리고 여기에 수반되는 국가의 의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많은 조약, 결의안, 선언문 등에 명시되어 있다.

국제인권법은 구속력 있는 조약상 의무와 세계인권선언을 포함한 선언문, 결의안, 원칙, 규칙 등 구속력 없는 국제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어도 이러한 국제기준은 상당한 법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유엔 협약, 규약과 같은 조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 지역기구 혹은 국제기구가 합의하여 수립된다. 이러한 조약은 국가가 인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조약에 수반되는 일반논평 또는 일반권고는 조약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일반 논평'이란 인권 조항의 내용, 주제별 쟁점 또는 작동 방식에 대한 조약기구의 해석이다. 일반논평은 특정 조항과 관련된 당사국의 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항 이행에 대한 접근법을 제안한다. 일반논평은 '일반권고'라고 불리기도 한다. 일반논평 또는 일반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국가가 조약에 따른 구속력 있는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된 카이로 행동계획은 성과 재생산 건강, 그리고 재생산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 문서이다. 카이로 행동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179개국의 합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의의가 있다. 카이로 행동계획은 성과 재생산 건강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 이후 행동계획에 대한 검토와 기타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개정되어 왔다. 특히, 카이로 행동계획은 재생산 권리가 이미 국가의 국내법과 헌법, 인권규범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인구개발회의 – 핵심원칙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원칙1)
- 성평등과 성형평성, 여성의 자율권을 증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는 것은 인구 및 개발 관련 계획의 초석이다.(원칙4)
- 모든 사람은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모든 커플과 개인은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교육, 수단을 이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원칙8)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원칙10)

"이러한 권리는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정보와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 권리와 최상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데 기초한다."

(국제인구개발회의 카이로 행동계획 제7.3항)

많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의 인권옹호활동 덕분에 국제인구개발회의를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섹슈얼리티와 재생산과 관련된 인권을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중요성이 국제 개발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다뤄진 것이었다. 국제인구개발회의는 특히 청소년의 인권과 필요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청소년이 가지는 비밀유지, 사생활, 정보에 기반한 사전 동의에 대한 권리에 따라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및 청소년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국제 및 지역 인권 규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제 협약, 규약, 선언 및 조약

1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6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7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역문서

1	**미주인권협약**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2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협약** (벨렘도파라 협약, 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3	**유럽인권협약**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4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위원회 협약** (이스탄불 협약,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5	**아프리카 인권헌장** (반줄헌장,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6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선택의정서** (Protocol Additiona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i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7	**아랍인권헌장** (Arab Charter on Human Rights)

요그야카르타 원칙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저명한 국제 인권 전문가들이 2006년에 작성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관한 국제 원칙이다. 당사국이 준수하기로 약속하거나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는 인권조약은 아니지만, 요그야카르타 원칙은 이미 존재하는 인권기준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법적 기관에서 인권 침해 사건을 해결할 때 이 원칙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 대법원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관련 헌법상의 권리 침해를 판결하는데 요그야카르타 원칙을 근거로 삼으면서, 사실상 이 원칙을 국내법에 적용했다.

성과 재생산 권리는 비교적 최근 국제 협약과 기준에서 정의된 개념이지만, 생명, 사생활, 건강, 교육, 정보 등에 대한 권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 폭력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와 같은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인권에 기초한다.

> ***성과 재생산 권리는 그 자체로 인권이며 모든 인권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국제인권법에 따라 국가는 모든 사람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한다. 또한 성과 재생산 권리를 향유하는 데 있어 비차별과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법과 정책을 통해 모든 사람이 차별, 폭력, 강압 없이 자신의 성별과 섹슈얼리티를 느끼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 또는 성과 재생산에 대한 정보나 서비스 제공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성별, 성 정체성, 성과 재생산 관련 개인의 선택을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이나 폭력을 방지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해야 한다. 국제법에 따라 국가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기반한 증오 범죄와 차별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민간의료기관 및 관련 종사자들이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상관 없이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고 폭력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최상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안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차별, 강압, 폭력 없이 모두가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가 체결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권리를 증진하고 잘못된 정보나 고정관념을 바로잡으며,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국가는 섹슈얼리티, 성평등, 인권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성과 재생산에 대한 특정 사람들의 선택이나 행동 혹은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에 대한 선택을 범죄화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은 모든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임신중지를 포함한, 임신 중 여성의 선택이나 행동을 제한하는 법률
- HIV 감염인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합의 하에 이뤄지는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률
- 여성 혹은 청소년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할 때에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지 등을 규제하는 정책이나 규정

사회에서 법이란 행동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름이나 관습에 불응하는 것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법 자체가 차별적인 경우도 있으며 이미 취약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주변화된 집단을 상대로 차별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는 다른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즉, HIV 감염인, 성노동자, 비혼여성,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들에 대한 고용, 주거, 건강, 교육 관련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

국가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옹호하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의무가 있다. 정부 정책과 사업은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에 대한 정의 실현과 법적 구제조치를 우선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방관하거나 국가에 의해 자행된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도 포함된다.

성교육과 성(섹슈얼리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성교육에 대한 권리는 그 자체로 인권인 동시에 건강권, 정보권, 성과 재생산 권리 등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0년 포괄적 성교육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건강한 성생활을 장려하고, 관계 내 평등을 강화하며, 원치 않는 임신과 성매개감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의 2009년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성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5~18세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본적인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소개하며 교육 및 보건 분야 의사결정자와 전문가를 위한 유용한 자료와 기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신체, 건강, 인권 등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논란과 낙인의 대상이다. 유엔에 따르면 아직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은 여전히 섹슈얼리티, 성과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건강과 섹슈얼리티에 대해 불완전하고 편향적이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섹슈얼리티와 재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심지어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국가들도 있다.

일부 교사와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자신의 역할을 잘 모르거나 아동·청소년과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금기 때문에 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마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국가는 모든 청소년에게 포괄적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교과 과정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연령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 공교육 밖에서도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제도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기 임신, 성매개감염 등 성과 재생산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학포럼 등의 방법을 통해 공교육 캠페인을 개발한다.
- 교사 연수에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킨다.
- 정확하고 접근 가능한 포괄적 성교육 프로그램을 담은 교육 자료를 개발한다.
  이 때 교육자료에 담긴 내용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고 HIV나 성매개감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평등을 장려해야 한다.

차별적 법률 사례 (2014년 8월 기준)

- 알제리 법에서는 부부 강간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나이지리아, 우간다, 러시아에서는 동성간 성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의 성소수자 인권 증진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 스페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튀르키예, 미국에서는 임신중지를 제한하려는 법적 시도들이 있었다.
-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는 성인이 혼인 관계의 배우자나 친척이 아닌 이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태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편이 아닌 남성과의 관계에서 임신한 여성은 기소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 인구개발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10세에서 24세 사이이지만, 대다수의 청소년은 여전히 포괄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정보, 교육 등을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임신과 출산 중 합병증, 젠더기반폭력,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관련 질병 등으로 청소년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많은 저소득 국가들에서 임신과 출산은 청소년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권리 외에도 건강권은 네 가지 필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의료시설은 (1)이용 가능해야 하며 (2)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3)수용 가능해야 하며 (4)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00년에 발표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4호에 따르면 성과 재생산 건강의 맥락에서는 이런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모든 일원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저렴한 비용 혹은 무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는 성별, 나이 등에 기반하여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와 치료는 의료윤리를 준수하고, 비밀과 사생활을 보장하며, 치료 받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서비스는 숙련되고 유능한 인력이 제공해야 된다.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빈곤으로 인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서비스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칸도 세라핀 Kando Seraphine,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청소년 활동가)

전 세계적으로 피임에 접근할 수 없는 여성의 수

2억 1,500만 명

빈곤층은 예방적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료는 민간병원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빈곤 외에도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교통비를 부담해야 한다.

"집에서 보건소까지 거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임산부 검진을 받으려면 등산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까지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사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고 조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숙박 시설도 없었습니다."

– (페루 원주민 여성)

가족 계획

유엔의 추정에 따르면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고, 이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매년 1억 8,700만 건의 의도하지 않은 임신, 1억 5,000만 건의 임신중지, 21만 5,000건의 산모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직도 여성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여성이 충분한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 계획 서비스를 우선순위로 제공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누리는 데 여성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례로, 피임약 등 피임도구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나 배우자의 동의나 통지가 있어야 한다는 법과 정책, 관행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다.

“일곱 번의 임신과 다섯 번의 출산 후 남편에게 피임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남편은 거부했습니다.”

– (부르키나파소의 한 여성)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의 대상, 연령 혹은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아이를 낳을 것인지, 낳는다면 언제 어떻게 낳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가족 계획 지원, 피임도구,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 등이 필요할 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 자신의 자녀 계획에 대해 정보에 기반한 자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서비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안전한 임신중지 수술과 임신중지 후유증 관리와 같은 서비스의 경우 금지되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되며, 여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다.

재생산권리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가 2014년에 발표한 세계지도 차트에 따르면 임신중지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될 때에 한하여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국가는 총 68개국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일부 국가에서는 강간을 당한 경우에도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거나 제한하기 때문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는 전 세계 산모 사망의 세 번째 주요 원인으로, 약 13%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가임기 여성의 40%가 임신중지를 엄격히 제한하는 국가나 임신중지가 합법이어도 실제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추정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강간을 포함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신중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는 17세 미만 여자아이들이다. 이 곳에서 강간으로 인해 임신이 된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은 임신을 유지하거나, (발각될 경우)감옥행을 감수하면서도 안전하지 않은 불법적인 임신중지 수술을 시도한다.

임신중지의 전면 금지는 건강권, 생명권, 고문과 그 밖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며 강간 생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다.

“저로서는 아이가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이 경악스러웠습니다. 12살인 제 딸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강간으로 인해 아이가 생기고 그 나이에 출산을 하는 건강상 위험을 생각하면 끔찍했습니다.”

– (니카라과, 아드리아나)

청소년이 경험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장벽

청소년들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적 금기로 인해 의료시설 및 보건소 종사자, 관계자들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협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이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고 충분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양육자나 배우자의 동의나 통지 조건, 동의 연령에 대한 법, 혼인 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법과 정책은 청소년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피임뿐만 아니라 HIV 검사와 치료, 임신중지, 섹슈얼리티 교육과 정보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양육자나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이 존재한다. 관련 법이 없는 국가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양육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관행과 정책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이는 사생활에 대한 청소년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에 대한 우려가 청소년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성건강 클리닉이나 가족계획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누군가 마주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한다. 진료소 직원이 자신의 성적 행동을 비난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을지, 양육자나 보호자 등 지역사회 다른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을지 걱정한다고 한다.

국가는 모든 청소년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양육자나 보호자의 허락과 무관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 을 고려한다.

- 청소년들이 가족으로부터, 법으로부터 적극적인 권리보유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적절한 안내와 지도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완전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건강 관련 조언이나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를 엄격하게 지킨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계획 지원을 제공하는 등 비밀이 보장되는 청소년 친화적인 재생산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해야 한다.

- 보건의료 시설 및 종사자의 특정 종교나 신념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력으로부터 보호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며 그 누구도 여러분의 몸을 건드릴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 (니카라과 마나과에 거주하는 15세 청소년인권운동가 로라 Laura)

모든 사람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퇴치에 관한 유럽위원회 협약**(이스탄불 협약)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협약** (벨렘 도 파라 협약) 등 여러 국제협약과 지역협약에 의해 보호된다. 폭력은 개인의 생명권, 신체 온전성 및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가는 관할권 내, 가정 안팎에서 일어나는 차별, 폭력, 괴롭힘 등에 대해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괴롭힘 유형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성적 대상화, 성적 모욕에 해당하는 제스쳐나 발언을 접하는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의 언어적 공격이나 때로는 물리적 공격을 받을 때이다.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여성 시위자들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 군대와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을 공격했다. 경찰은 여성 시위자들을 폭행하고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을 휘두르면서 '처녀성 검사'와 강간을 자행했다."

※ 출처: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잔인한 불처벌과 방치: 시위대를 살해하고 고문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집트 군부', 문서번호: MDE 12/017/2012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저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존재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습이나 행위들이 포함된다.

조혼과 강제결혼	여성성기절제
처녀성 검사	아내 상속 (남편 사망 후 부인을 남편의 남성 친족과 결혼시키는 관습)
남아 선호	
월경에 대한 금기	여성에게 금기된 음식이나 물건
동성간 성행위 금지	지참금과 신부값

여성성기훼손

"여성의 성, 섹슈얼리티가 억압받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히 알게 된 것은 제 딸을 통해서였습니다. 여성성기훼손이 의무가 아니고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인도네시아 누르시아바니 카트자성카나Nursyahbani Katjasungkana)

여성성기훼손(절제)은 여성 아동과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너무도 흔한 형태의 위험한 관행이다. 여성성기훼손이란 여성의 외부 생식기의 일부 혹은 전체를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문화적 관습으로 시행되는 여성성기훼손은 여성들의 성적 욕구와 성적 쾌감을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여성성기훼손은 젠더기반폭력의 일종이며 여성의 신체 온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여성성기훼손을 금지하는 법과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성기훼손은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여기서 폭력이란 물리적 공격이나 폭행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폭력이란 자유의 박탈을 통한 강압, 협박, 괴롭힘, 강요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젠더기반폭력은 가족 간에 혹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든,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든 모두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섹슈얼리티, 성 정체성, 재생산 등을 범죄화하는 대부분의 법과 정책은 전통문화의 보존 혹은 개인의 인권을 초월하는 규범적 윤리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시행된다. 성과 재생산 권리가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성적권리를 논쟁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국가들이 있다.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신념을 가질 권리는 모두에게 있지만 이로 인해 성과 재생산 권리,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다른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젠더기반폭력과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성별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열등감이나 우월감 또는 특정 성별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에서 비롯되는 편견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행동양식을 바꿀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간통과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는 등 성인 간 합의된 성행위를 비범죄화해야 한다.

- 공적 영역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

- 젠더기반폭력 사례를 수사하여 가해자를 기소 및 처벌하고, 피해자의 사후 보호를 위한 사회심리학적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검사 및 진료, 응급 피임,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 서비스, HIV 상담 등 성과 관련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 교육 캠페인을 시작하여 학교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

-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보상, 재활 등 충분한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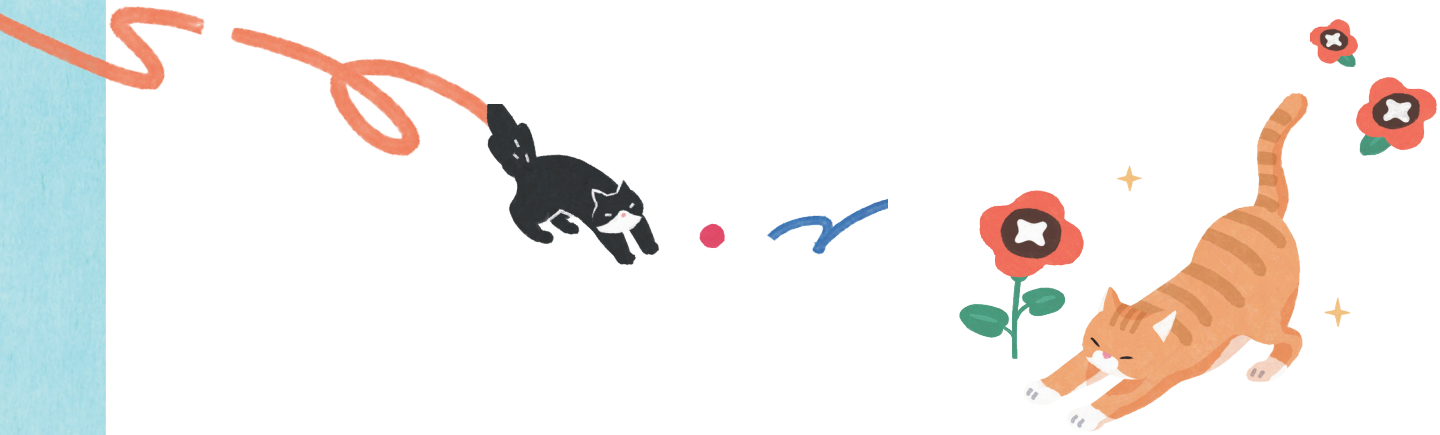

책무성과 구제방안

인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모니터링하며,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권리를 제공할 책임 모두 국가의 책무이다. 즉, 국가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동시에 해당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한다. 국가의 법률, 정책 및 사업이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경우 책무성 보장 매커니즘을 통해 시민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발생한 피해를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책무성 보장 매커니즘은 각 국가에 따라 다르게 구현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권옹호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당국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개인이나 조직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이나 국제 혹은 지역 매커니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책무성 보장을 통해 정부와 개인 또는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 대화와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다. 책무성을 확립함으로써 개인이나 공동체가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벽을 해결하고 제거할 수 있다. 효과적인 책무성 보장 장치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는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인권보호 의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인권과의 관계

인권이란 양도할 수 없기에 그 누구에게도 줄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인권은 불가분하기에 모든 인권은 동등하게 중요하다.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기에 하나의 권리가 침해되면 다른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권리가 실현되면 다른 권리의 실현에 기여한다. 인권은 참여적이기에 우리 모두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키기 위해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권의 교차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 앰네스티 인권교육자료 <나의 권리를 존중하라, 나의 존엄을 존중하라: 모듈1- 빈곤과 인권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 Module on - Poverty and Human Rights> 참고)

성과 재생산 권리가 침해된다면 다른 다양한 권리를 누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성과 재생산 권리가 보호되고 증진된다면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노동권, 사생활권,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 생존권 등 여타 다른 인권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

- HIV 감염인들은 의료, 고용, 주거와 관련하여 차별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권, 주거권, 그리고 평등한 고용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
- 국가가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경우 성소수자들이 자의적으로 체포 및 수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표현과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 피임법이나 가족계획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의 경우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수의 자녀들을 낳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혼외 자녀를 둔 여성, 성노동자, 트랜스젠더 등 성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당하고 강제 퇴거를 당하거나 해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권, 평등한 고용에 대한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누릴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인권옹호자들은 폭력, 공격, 자의적 구금 등을 겪어오면서, 개인의 신체적 온전성,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성별과 무관하게 공개적으로 비난 받거나 수치심을 느낄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일자리, 살던 집, 사회적 지위까지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생활권, 평등한 고용에 대한 권리, 주거권,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학교에서 성폭행과 괴롭힘은 성별과 무관하게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지만, 특히 여성 청소년, 그리고 통상적인 성별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청소년에 대한 연령 기반 차별과 성(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는 청소년들이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들의 건강권과 개인의 신체 온전성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성과 재생산 권리 알고 주장하기>> 자료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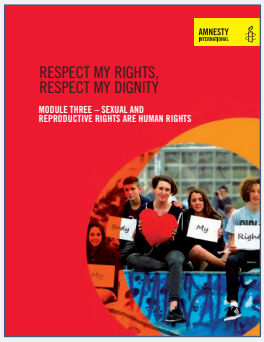

<<성과 재생산 권리, 알고 주장하기>>는 국제앰네스티가 2015년 1월에 발행한 <<나의 권리를 존중하라, 나의 존엄을 존중하라: 모듈3 – 인권으로써 성과 재생산 권리 Respect my rights, respect my dignity: Module three –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re human rights>> 인권교육자료 3장의 내용 일부를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이 자료는 국제앰네스티가 개발한 청소년을 위한 인권교육자료 시리즈 중 세 번째입니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혹은 또래 집단과 함께 성과 재생산 권리를 둘러싼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행동하는 여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금기시되는 주제인 성과 재생산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이 대화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교육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 재생산 권리 교육방법론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주제의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등 성과 재생산 권리를 알고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한 정보는 영문자료 95~96 pag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문자료 전문(영문) 바로가기

성과 재생산권리, 알고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 Listen to their voices and act:
  Stop the rape and sexual abuse of girls in Nicaragua (Index: AMR 43/008/2010)

- My Life, My Health, My Education, My Choice, My Future, My Body My Rights
  (Index: ACT 35/001/2014)

- The Wire Jan/Feb 2014, p. 14,
  “Breaking Taboos” an interview with Kando Seraphine and “Remembering Amina”

- Giving life, risking death:
  Maternal mortality in Burkina Faso (Index: AFR 60/001/2009)

- Left without a choice:
  Barriers to reproductive health in Indonesia (Index: ASA 21/013/2010)

- Brutality unpunished and unchecked:
  Egypt’s military kill and torture protesters with impunity (Index: MDE 12/017/2012)

- Making love a crime:
  Criminalization of same-sex conduct in sub-Saharan Africa (Index: AFR 01/001/2013)

기타 자료

-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CRR), Questions and answers:
  Understanding the world abortion law map available on

-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000년 일반논평

- UNESCO,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섹슈얼리티 교육에 대한 글로벌 기술 가이던스, 2009년)

- UNFPA,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Advancing human rights, gender equality and improve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2010

- 국제인구개발회의 UNFPA 행동계획, 제 7장 재생산 권리 및 건강

- WHO 정책 브리핑, From evidence to policy:
  Expanding access to family planning – Improving contraceptive services for adolescents 2012

- WHO, Safe abortion guidance 2012 (2012년 안전한 낙태지침)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Amnesty International, Realiz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A human rights framework (ACT 35/006/2012)

- Amnesty International USA,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factsheet

- Th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UNFPA,
  The right to contraceptive information and services for women and adolescents factsheet

- The 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Religious Voices Worldwide Support Choice: Pro-Choice Perspectives in Five World Religions

- Indonesian Youth Lesbian Center, Yogyakarta Principles Comic

- IPAS, Human rights of adolescents

-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Exclaim: A young people's guide to sexual rights guidebook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Born free and equal

-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factsheets

- UNICEF,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he Youth Coalition,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oolkit

- IPAS, Young women and abortion: Avoiding legal and policy barriers